

# 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

[2023.2.28]

태봉초등학교

1. **(적용)** 본 시행은 태봉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 시에 적용된다.
2. **(위원의 구성)**
  - 가.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6명을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023.2.27.로부터 임원선출 종료 시까지로 한다.
  - 나. 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다.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업무)** 선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선출공고 접수 · 확인 · 발송에 관한 사무
  - 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 다.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 라.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
  - 마.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 바. 선거의 공보에 관한 사무
  - 사.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 아.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자. 당선자 공고 · 통보에 관한 사무
4. **(지원)**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5. **(선거방법)** 임원은 학부모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현장 투표로 선출한다. 단, 무투표 당선인 경우 현장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가정통신문 회신)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후보자 등록)**
  - 가. 후보자 등록 공고는 3월 2일 이전에 행하고 등록 마감은 3월 6일 14:00까지로 한다.
  - 나.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자등록서 및 후보자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되며,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다.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에 의한다.
  - 라.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7.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에 의하여 선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8. (명부작성)

가. 학부모 선거인 명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본,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부를 작성한다.

나.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이어서 무투표인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9. (명부의 열람) 선거인 명부는 『열람용』을 학부모상주실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명부 열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10. (명부의 수정)

가. 선거인 명부를 수정할 때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나. 선거인 명부의 열람 기간이 지난 후 학부모회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록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다. 선출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 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11. (명부의 확정)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일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12. (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 개시 3일 전까지 각 선거권자에게 발송·게시한다.

13. (소견발표)

가.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학부모 총회에서 실시한다.

나. 소견발표는 1인당 3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14. (투표소 설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한다.

15. (투표)

가. 투표방식은 단기명기표제로 한다.

나. 본교 재학생 학부모 1명에게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재학생이 2명 이상인 학부모인 경우 학부모 1인이 참석하면 1표의 선거권을, 학부모 2인(예: 부, 모)이 참석하면 2표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학생 수가 3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2표를 행사할 수 있음.)

다.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직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라.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 무효 등인 경우 그 시기가 후보 등록 신청 기간

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 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안내문을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6. (투표시간)** 선출관리위원장은 총회일 입후보 소견발표 직후 학부모가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투표 시간을 정하여 안내한다.

**17. (투표의 진행)**

가. 투표용지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관리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개시 시각까지 보관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킨다.

**18. (개표의 진행)**

가. 개표는 총회 당일 투표 시간 종료 직후 실시한다.

나.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한다.

**19. (임원당선인 결정방법)**

가. 개표결과 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나.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임원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기입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에서 당선을 결정한다. 사전에 전자적 방법(가정통신문)으로 회신한 경우 총회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투표종료후에 개표하고 선출관리위원회가 임원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개표 결과를 선출관리위원장이 공표하고 이를 학교에 보고 후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당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21.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투표 장소에서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